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17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544	김도읍의원	2024.08.05.	2024.09.25.
	7881	신영대의원	2025.02.04.	2025.04.21. (소위직회부)
	2878	서천호의원	2024.08.16.	2024.09.25.
	10048	임호선의원	2025.04.23.	2025.06.23.

나.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에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가축방역관 결원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축방역인력 충원 경로인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를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며 수당 및 여비의 지급·부담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진료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주체를 수의사에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및 제41조제1항제1호).
- 나.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에 시·도지사를 포함하고,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다.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그 위·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 신설).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의사”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를 “특별시장·통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공수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5.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의2(심리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리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시장·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5.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급하는-----  
-----  
-.

제34조의2(심리지원)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리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2. 3. (생략)

② · ③ (생략)

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지원 및 경비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과태료) ① -----  
-----  
-----  
-----.

1. -----  
-----  
-----자

2.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